

##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

### 1.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

- 공 사 명: 2026년 철산, 하안, 광명동 지역 가로등 유지보수공사(단가계약)2차
- 공사위치: 철산, 하안, 광명동 지역
- 공사기간: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- 공사내용: 램프 교체 등 163개 공종
- 공사예정금액: 금47,620,000원(금사천칠백육십이만원)

(단위: 원)

| 추정금액       | 기초금액       | 추정가격       | 부가가치세     | 관급자재액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도급자설치 | 관급자설치 |
| 47,620,000 | 47,620,000 | 43,290,909 | 4,329,091 | -     | -     |

※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포함

※ 단가금액: 금40,723,060원(금사천칠십이만삼천육십원)

- 본 견적은 지역제한, 총액입찰 대상,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.

### 2. 견적서 제출(투찰) 및 개찰

| 견적서 제출(투찰)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찰일시                 | 개찰장소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2026. 8. 24. 18:00부터<br>2026. 8. 28. 10:00까지 | 2026. 8. 28. 11:00까지 | 광명시청 회계과<br>입찰집행관 PC |

※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, **재입찰은 개찰당일 16:00까지 투찰**하시고, **17:00시에 개찰**합니다.(단,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.)

### 3. 견적제출 참가자격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, 「전기공사업법」 제4조에 의한 **전기공사업**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,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그 주된 사무소【법인등기부상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)】가 **광명시** 내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.
-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.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입찰서

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
#### 4. 현장설명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

#### 5. 전적제출의 무효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#### 6.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

-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.

#### 7.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

-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.
-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$\pm 3\%$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, 다빈도 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.
-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 (이하 “국민연금보험료 등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전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.745%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[별표1]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, 동일가격으로 전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※ 본 공사의 A 값 : 2,092,494원

## 8. 청렴계약 이행 준수

- 본 건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9.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

-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10.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

-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11.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

-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.
  -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광명시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.
  -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.
  -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.

## 12.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
-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**붙임1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**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「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

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 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# 13.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

-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 제12조(수의 계약체결제한) 사항이 적용됩니다.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‘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’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,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,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. **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**하여야 하며,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
### 14. 기타사항

-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이 적용되며 **입찰 참가자는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「계약이행 특수조건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, 「지방계약법」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「지방계약법」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본 공사는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』에 따른 **『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』 대상 공사**이며,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『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』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  
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,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 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**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**
-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(현장별 보증서)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**하여야 합니다. 수급인(하수급인 포함)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.
-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(E-9)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(H-2) 근로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-296(2019. 1. 8.)호 관련)
-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담금은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』(행정안전부예규 최신평)에 따르며,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『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』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72)에 따라,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**조정 없이 반영**하여야 합니다. 또한 반영된 보험료,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

(단위:원)

| 연금보험료   | 건강보험료   | 노인장기<br>요양보험료 | 퇴직공제<br>부금비 | 산업안전<br>보건관리비 | 합계(A값)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829,724 | 627,970 | 82,515        | -           | 552,285       | 2,092,494 |

- 입찰자는 입찰유의서,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 공사계약특수조건, 설계서,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 (부가세제외)의 1.5%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.

## 15. 보충정보 제공처

- 전자입찰이용안내: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1588-0800)
-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
- 광명시 홈페이지([www.gm.go.kr](http://www.gm.go.kr))
-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: 광명시 회계과(☎02-2680-2609)
-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: 광명시 도로시설과(☎02-2680-2938)

2026. 8. 24.

**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**



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14호 서식]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1쪽)

|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주자 | 발주기관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발주내용    |      | [ ] 공사 [ ] 용역<br>[ ] 물품 [ ] 기타 |
|     | 수의계약 사유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| 소속 | [ ] 개인 [ ] 법인<br>[ ] 단체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| 주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①              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②               |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③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④              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⑤               |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⑥              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⑦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⑧              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| 발주자<br>확인<br>사항 |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“예”를 답변한 경우,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*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<br>[ ] 아니오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(기관·법인·단체명) 계약상대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